

#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96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연 개요

○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

### ○ 관련법령

- 법률 : 민법(제32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조례 :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

“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”

## 나. 주요 사업

-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(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)
  - 시정·구청 상담서비스 제공
  -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
  -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
  -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
  -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
  -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
  -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
  -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·운영 및 관리
  -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다. 출연의 필요성

-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
  -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
  - 정보통신 환경 발달로 단순상담에서 전문상담 또는 특화상담 수요 증가
  -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###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봉사담당관 민원기획팀 강연태 (☎2133-6542)

#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산출내역

## □ 예산(안)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9년		2020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출연금	(x-) 20,130,209	(x-) 21,528,509	(x-) 26,777,418	(x-) 5,248,909	(x-) 24

## □ 출연금 산출내역

과목구분	2019년 본예산	2020년 예산(안)
출연금	○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= 20,130,209천원	○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= 26,777,418천원
	- 일반관리비 = 20,120,209천원	- 일반관리비 = 20,992,027천원
	▷ 인건비 = 15,039,814천원	▷ 인건비(수당 포함) = 15,811,340천원
	▷ 경비 = 3,912,637천원	▷ 경비 = 4,074,175천원
	▷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= 183,000천원	▷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= 72,500천원
	▷ 성과급(이사장 및 직원) = 984,758천원	▷ 성과급(이사장 및 직원) = 1,034,012천원
		- 사업비 = 5,775,391천원
		▷ 120청사 이전비 = 2,910,000천원
		▷ 상담시스템 운영비 = 2,576,671천원
		▷ 상담지식 정보 현행화(홍보사업, 회의운영비 등) = 29,800천원
		▷ 상담직원 역량강화(교육비) = 148,400천원
		▷ 감정노동 보호 프로그램 = 110,520천원
	- 예비비 = 10,000천원	- 예비비 = 10,000천원